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도입 적용되었으며, 이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업종	기준 수입금액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2 이상의 업종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로써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text{주업종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

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자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내용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된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주요 사업 내역·수입금액 검토·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확인의무 위반시의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